



“국민과 함께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막는다”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26.05.28.) -
- 신고자뿐만 아니라 기여자에도 포상금 지급 -

5. 28.(목)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26년 5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보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서 이를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지급사유	[개정전]		[개정 후]	
	위조상품	영업비밀 해외유출	위조상품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	○	X	○	○
기여자	X	X	X	○

[개정전]

[개정 후]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년 17건, '21년 22건, '22년 20건, '23년 23건, '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비법과 같은 비밀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기업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서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되며, 그 피해는 산업 생태계 약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법은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되어, 기술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 조기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황금시간대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 붙임: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

담당 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준경	(042-481-5213)
	지식재산보호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주영	(042-481-5771)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신고포상금</u>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포상금 지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포상금</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u>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p>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p> <p>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지식재산처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p> <p><신설></p>	<p>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지급받는 포상금-----.</p> <p>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 포상금의 -----.</p> <p>④ -----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p> <p>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p>

다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사

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4.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